Ⅰ. 설 계 설 명 서

Ⅰ. 설 계 설 명 서

1. 공 사 명

경주교 재가설공사(1단계) 폐기물 운반 및 처리

2. 공사의 목적

본 용역을 통해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차량통행의 편리를 제공하고, 통행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3. 공사위치

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지내

4. 공사개요

○ 보 철거 및 상수관 이설 1식

가. 폐콘크리트 : 1,641 Ton

나. 폐 아 스 콘 : 38 Ton

다. 건설폐재류 : 1,787 Ton

5. 설계변경조건

가. 작업의 추가, 삭제 및 변경

1) 발주자는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, 물량의 증가,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.

2)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, 감소,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,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.

나. 물 성상별 수량이 증·감 되었을 때(운반거리 변경 등)

1)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 시 반영되어야 한다.

다.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 처리함.

라. 폐기물의 각 성상별 운반거리 증·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함.

마.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.

바.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은 사전에 감독관(건설사업관리자)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 하에 처리토록 한다.

사.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

아.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

6. 설계 적용기준

가. 폐기물 처리 단가 : 한국건설자원협회(2026)

나. 운반 및 처리 :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(2026)

7. 공사용 중기

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(건설사업관리자)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.

8. 안전사고

가.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나.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.

9. 용역기간

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년 월 일(대상 폐기물 처리완료시)까지로 한다.